##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용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275

발의연월일: 2020. 11. 12.

발 의 자:이용우·고영인·강준현

홍정민 • 이용빈 • 민병덕

진성준 • 서영석 • 김주영

송영길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(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)로 변경하였는데,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(안 제2조제1항제9호가목, 제33조의4제1항, 제41조제1항 및 제2항, 제42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).

법률 제 호

###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9호가목 중 "대차대조표"를 "재무상태표"로 한다.

제33조의4제1항 전단 중 "대차대조표"를 "재무상태표"로 한다.

제41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"대차대조표"를 각각 "재무상 대표"로 한다.

제42조의 제목 중 "대차대조표"를 "재무상태표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대차대조표"를 "재무상태표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대차대조표"를 "재무상태표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대차대조표"를 "재무상태표"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사용하	제2조(정의) ①
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~ 8. (생 략)	1. ~ 8. (현행과 같음)
9. "비금융주력자"란 다음 각	9
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
자를 말한다.	
가.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(대	가
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	
이 아닌 업종을 운영하는	
회사를 말한다. 이하 같	
다)인 자의 자본총액( <u>대차</u>	
<u>대조표</u> 상 자산총액에서 부	<u> 상태표</u>
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	
다. 이하 같다)의 합계액	
이 동일인 중 회사인 자의	
자본총액의 합계액의 100	
분의 25 이상인 경우의 그	
동일인	
나. ~ 마. (생 략)	나. ~ 마. (현행과 같음)
10. (생 략)	10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33조의4(소규모 은행지주회사	제33조의4(소규모 은행지주회사
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	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

발행절차 등에 관한 특례) ① 비상장은행이 발행하는 은행지 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 증권의 발행가액이 상장은행지 주회사 자본총액(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)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상장은행지주회사 주주총회의 결의(이하 이 조에서 "특별결 의"라 한다)는 같은 호에 따른 상장은행지주회사 이사회의 의 결(정관에서 「상법」 제368조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 를 거치도록 한 경우에는 그 주주총회의 결의)로 갈음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33조의3제1항 에 따른 주식교환계약서에 특 별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은 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 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.

#### ② ~ ⑤ (생 략)

제41조(재무제표의 공고 등) ① 제 은행은 그 결산일 후 3개월 이

발행절차	등에	관한	특례)	1
		재-	무상태표	<u></u>
2 ~ 5				
]41조(재무	제표의	] 공고	등) (1	

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 식에 따라 결산일 현재의 <u>대차</u> 대조표, 그 결산기(決算期)의 손익계산서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연결재무제표(聯結財務 諸表)를 공고하여야 한다. 다 만,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 이 내에 공고할 수 없는 서류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공고를 연기할 수 있 다.

② 제1항에 따른 <u>대차대조표</u>, 손익계산서 및 연결재무제표에 는 대표자 및 담당 책임자가 서명・날인하여야 한다.

#### ③ (생 략)

② 제1항에 따른 <u>대차대조표</u>에 는 담당 책임자 또는 그 대리

<u>상태표</u>
② <u>재무상태표</u>
③ (현행과 같음)
제42조( <u>재무상태표</u> 등의 제출) ①
<u>재무상태표</u>
,
② <u>재무상태표</u>

인이 서명·날인하여야 한다.	<u>.</u>
③ 은행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	3
에 따라 제1항에 따른 <u>대차대</u>	재무상
<u>조표</u> 외에 한국은행의 업무 수	태표
행에 필요한 정기적 통계자료	
또는 정보를 한국은행에 제공	
하여야 한다.	